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62
----------	-------

발의연월일 : 2017. 12. 1.

발의자 : 고용진 · 권칠승 · 김병욱
김해영 · 신경민 · 윤관석
이종걸 · 임종성 · 제윤경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 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1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의 제목 “(참여제한)”을 “(참여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그”를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그”로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참여 제한)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8조(참여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u><신 설></u>	

<p>③ <u>제1항에</u>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징수할 수 있다.</u> ⑥ <u>제1항 및 제4항에</u>----- ----- ----- ----- ----- ----- ----- ----- ----- ----- ----- ----- ----- <u>및 제재부가금을 부과·</u> <u>징수하는 경우 그</u> ----- -----.</p>
--	--